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본문 중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선정된 날”을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되거나 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된 날”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수급권자의 추천 등) ① 법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또는 문화재청장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 또는 문화재청장에게 추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은 해당 신청자의 가족(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이 해당 신청자와 함께 의료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범위의 가족을 말하며, 이하 “가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법률의 적용 대상자가 1명 이상 있을 것

2. 가족 전원이 제6항에 따른 추천 기준을 충족할 것

③ 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와 그 가족을 해당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수급권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하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라 한다)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제1항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를 추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 인정 여부와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경우 의료급여의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당 추천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⑥ 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은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의 추천 기준을 매년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3(수급권자에 관한 사항의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된 사람이 있거나 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수급권자 인정을 한 경우
2. 수급권자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한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한 경우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그밖에”를 “그 밖”으로, “시·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으로 한다.

- ①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

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에 따라”로,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제8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의3(과징금의 부과 기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 중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을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및 대행청구단체”로, “업무”를 “업무를”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에는 대표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별표 4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후에 신고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3(장려금의 지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분 또는 효능이 같아 대체 사용이 가능한 약제 중 급여비용이 보다 저렴한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의료급여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한 의료급여기관에 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제1항에 따른 처방 또는 조제로 인하여 의료급여 재정 지

출에서 절감된 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제3조의2”를 “제3조의2, 제3조의3”으로, “선정”을 “인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2조”를 “법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으로, “행정처분 및 보고·검사 등”을 “행정처분, 보고·검사, 자료 요청 및 포상금·장려금 지급 등”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과태료 부과 기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급권자(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로 본다.

제3조(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4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및 문화재청장이 통보한 선정기준은 제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이 통보한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의 추천 기준으로 본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의2 관련)

1.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가. 일반기준

- 1)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나목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자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전 5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5년 이내의 기간 산정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그 직전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서를 송달받은 날까지로 한다)에는 나목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 3) 나목1) 및 2)의 경우 모두에 해당되는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기간은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을 합하는 경우에도 1년을 넘을 수 없다.

나. 개별기준

- 1)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단위 : 일)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의료기관·약국·한국회귀의약품센터·보건의료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5만원 이상 8만원 미만			10	20	30
25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8만원 이상 14만원 미만		10	20	30	40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14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10	20	30	40	50
80만원 이상 3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20	30	40	50	60
32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30	40	50	60	70
1,4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0	50	60	70	80
5,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50	60	70	80	90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총부당금액(조사 대상 기간 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부당하게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 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은 (총부당금액/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한다.
3. 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해당되는 심사결정 총급여비용의 합산금액으로 한다. 다만, 급여  
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을  
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
4. 부당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1%마다 업무정지 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  
당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을 가산한 경우에도 1년을 넘을 수  
없다.

2) 의료급여기관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을 1년으로 한  
다. 다만, 서류 중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의료급여비용계산서 및 본인부담  
금수납대장을 제외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을 180일로 한다.

2.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제3차 의료급여기관이 제1호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날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기간 중 업무정지 기  
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별표 3]

과징금 부과 기준(제16조의3 관련)

- 가. 과징금은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2배,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3배, 30일 초과 50일 이하인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4배,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 나. 의료급여기관이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 다.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목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자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전 5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5년 이내의 기간 산정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그 직전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서를 송달받은 날까지로 한다)에는 가목에 따른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은 부당하게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를 넘을 수 없다.

[별표 4]

포상금 지급 기준(제18조의2제4항 관련)

신고인 유형	지급기준	
	징수금의 금액	포상금의 금액
1. 의료급여기관 관련자 가. 의료급여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및 그 밖의 직원 등이 그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경우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백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다만, 5백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한다.
2.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진료와 관련된 급여비용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2천원 이상 2만원 이하	6천원
	2만원 초과	징수금 × 50/100 다만, 3백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3백만원으로 한다.

비고

1. “징수금”이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비용을 말한다.
2. 위 표의 징수금의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위 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을 지급할 때 2천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5]

### 과태료 부과 기준(제22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조사에 협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일 수 있다. 다만, 늘이는 경우에도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의료급여기관이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2항제1호	30	60	100
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 절	법 제37조제1항	500	500	500

<p>차가 진행 중인 자가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리지 않은 경우</p>				
<p>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판매업자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수리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검사 등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p>법 제37조제2항제2호</p>	<p>30</p>	<p>60</p>	<p>100</p>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한 범위 안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수급권자의 수를 확정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통보한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제2조, 법 제3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통일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국가보훈처장 및 문화재청장은 시·도별 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의 수, 선정기준 등을 명시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급권자에 관한 사항의 통  
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생긴 때에는 지  
체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  
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를 선정한 때
2. 수급권자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요건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을 변경한 때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한 때

제6조(의료급여의 개시일) 수급권  
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제4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선정된 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연고자는 행정기관이 응급진

<삭 제>

제6조(의료급여의 개시일) -----  
----- 법 제3조  
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되거  
나 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수  
급권자로 인정된 날 ----. ----

료를 받게 한 날부터, 법 제3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날부터 개시한다.

<신 설>

제6조의2(수급권자의 추천 등) ①

법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또는 문화재청장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 또는 문화재청장에게 추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은 해당 신청자의 가족(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이 해당 신청자와 함께 의료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범위의 가족을 말하며, 이하 “가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법률의 적용 대상자가 1명 이상 있을 것

2. 가족 전원이 제6항에 따른 추천 기준을 충족할 것

③ 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와 그 가족을 해당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수급권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하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라 한다)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인정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제1항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

다.

⑤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를 추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 인정 여부와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경우 의료급여의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당 추천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⑥ 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은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의 추천 기준을 매년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3(수급권자에 관한 사항의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신 설>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된 사람이 있거나 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수급권자 인정을 한 경우
2. 수급권자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한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한 경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의료급

②시·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2. (생략)

3. 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3. (생략)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삭제

③ ~ ⑦ (생략)

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 각호 -----  
-----.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③-----  
----- 각호 -----  
-----.

1. 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  
-----

2. 3. (현행과 같음)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① 법 제10조에 따라 -----  
-----  
별표 1과 ---.

③ ~ ⑦ (현행과 같음)



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에는 대표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내  
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  
부를 결정하여 신고인(2명 이상  
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를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은 제2항에 따라 포상  
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으면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포  
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  
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인에게 별표 4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 설>

후에 신고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3(장려금의 지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분 또는 효능이 같아 대체 사용이 가능한 약제 중 급여비용이 보다 저렴한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의료급여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한 의료급여기관에 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제1항에 따른 처방 또는 조제로 인하여 의료급여 재정 지출에서 절감된 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의 지급 기준  
과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  
장·군수·구청장의 업무중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2. 삭 제
3. 4. (생략)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  
5조의2제3항 또는 이 영 제19조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20조 또  
는 조례·규칙에 따라 해당 권  
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제6항--  
-----  
---

3. 4. (현행과 같음)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  
-----  
-----  
-----  
-----  
-----  
-----  
-----  
-----  
-----

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8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등 및 변경, 중지 등에 관한 사무
2. ~ 8. (생략)
9.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불급에 관한 사무
10. (생략)
11. 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2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무

<신설>

-----  
-----  
-----  
-----  
-----  
-----  
-----  
-----  
-----  
-----  
-----

1. ----- 제3조의2, 제3조의3  
----- 인정  
-----
2. ~ 8. (현행과 같음)
9. -----  
----- 대지급금-----  
----
10. (현행과 같음)
11. 법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행정처분, 보고·검사, 자료 요청 및 포상금·장려금 지급 등----  
제22조(과태료 부과 기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연 락 처	(02) 2023 - 8257